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79 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김용민·황정아·한준호

임미애 · 위성락 · 이성윤

서영석 • 민형배 • 김동아

박지원 · 서미화 · 김 현

장경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.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.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.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.

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 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.

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(안 제44조의7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"제14조에"를 "제14조 및 제14조의2에"로, "또는"을 "·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촬영물·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14조의2에 따른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	3
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	
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	
자 또는 게시판 관리・운영자	
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	
•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	
여야 한다.	<u>.</u>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	1
요청[제1항제9호의 정보 중	
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	
한 특례법」 <u>제14조에</u> 따른	제14조 및 제14조
촬영물 <u>또는</u> 복제물(복제물의	<u> 의2에</u> <u>•</u> 편집물 •
복제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	합성물·가공물 또는
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	
포함한다]이 있었을 것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

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 여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촬 영물・편집물・합성물・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게 한 경 우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 관이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1 4조의2에 따른 손해를 입은 사 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 상책임을 진다.